

감 사 보 고 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부분의 계정 및 수지 결산은 적법하였고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사무국의 2014년 회계연도 예산총액은 금 11,838,892,000원이며, 결산총액은 금 11,940,820,633원입니다.

▷ 법인사무국의 201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013년도 이월금은 금 3,443,072,592원이며, 2014년도 세입총액은 금 8,497,749,041원이고, 2014년도 세출총액은 금 5,165,838,599원이었으며, 2015년 회계연도 이월금은 금 6,774,982,034원입니다.

▷ 산하시설의 2014년도 예산총액은 금 23,395,665,000원이며, 결산총액은 금 24,462,731,924원이며, 전출금 지원총액은 금 2,522,519,638원입니다.

▷ 2014년도 법인사무국 기부후원금 내역은

① 금융결제원 지로납부 후원금과 무통장입금 및 자동이체를 통한 내역은 금 8,353,054,89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② 승가원을 방문하여 직접 후원한 후원금품 내역은 방문자에게 고유번호가 인쇄된 영수증을 발급하여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법인사무국을 통해 후원하는 후원금품 내역은 법인사무국에서 접수한 후 해당시설에 적절한 배정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업내용은 입안·기획·결과 보고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으며, 단위 사업의 개발 노력도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감사는 첨부된 결산서가 2014년도 12월 31일 현재

의 재무상태와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예산 집행내용을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2015년 2월 9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감사 이 세 형



별첨 : 감사의견 세부사항

□ 산하시설 공통 사항

1. 식자재 납품 업체의 기부성 후원 금지 및 식자재 납품 단가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단가 조정 필요

관행으로 식자재 납품 업체와 계약시 각종 기부성 후원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는 식자재 납품단가의 증액으로 이어지므로 결과적으로는 시설에 손해가 될 수 있으며 관할 법률 및 관청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2015년부터 식자재 업체와의 계약시에는 기부성 후원을 제외하되 식자재 단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보다 강조하여 좋은 식자재를 적절한 가격에 구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차량운행 안전관리 강화

산하시설 중 외근 업무가 잦은 시설은 차량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잦은 편입니다. 이는 직원의 안전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이에 부수적으로 차량보험료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경력이 미미한 직원의 운전교육 및 전반적인 안전운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3. 의약품 재고 관리 강화

산하시설 중 비상 의약품을 보관하는 시설은 수시로 의약품의 상태 및 유통기한을 점검하여 혹시 모르는 의약품의 변질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